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162호

나.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다. 발의일자 : 2016. 4. 27.

라. 회부일자 : 2016. 4. 28.

II. 제안이유

-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가. 진로교육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학교진로활동실 및 진로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직업체험기관 및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진로교육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 바. 진로교육에 관한 자문 및 교원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6. 5. 5 ~ 2016. 5. 13).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6년 4월 27일 김문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162호로 발의되어 2016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내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한 검토

- 국회는 지난 2015년 6월 22일 학생들에게 내실 있고 꾸준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서울교육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대입중심의 경쟁교육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적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입시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¹⁾
- 이런 면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진로개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동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The huffington post korea」, “한국교육의 망가진 GPS”, 2016. 5. 26. 참고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등 현재 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및 상담 기능의 확대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붙임1〕 참고)

나. 주요조문별 검토

1) 안 제5조(진로전담교사의 배치 등)

- 동 조례안 제5조는 교육감에게 「진로교육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²⁾ 따라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안착을 위해 우선 보직교사로 임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3.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 과목으로 표시(부전공으로 표시된 경우 포함)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배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³⁾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도 각급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는바, 진로전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2016년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진로교육담당 보직교사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부전공자격 연수 후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1] 진로전담교사 전체 현황

학교급	학교수(교)	진로전담교사수(명)	미배치교수(교)	배치율(%)	비 고
초	599	599	0	100	
중	384	378	6	98.4	
고	318	307	12	96.2	배재고 2명 배치(강동구)
계	1,301	1,284	18	98.6	

○ 그러나 현재 진로전담교사 1인당 담당학생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748명, 중학교는 694명, 고등학교는 978명에 이르고 있어 진로교육을 위한 체계적 상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 연수를 통해 보다 많은 진로전담교사가 각급 학교에 확대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지침」 및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지침」, 교육부, 2016. 1. 참고.

[표2] 진로전담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

학교급	학교수(교)	진로전담교사수(명)	학생수(명)	담당학생수(명)	비 고
초	599	599	448,248	748	
중	384	378	262,469	694	
고	318	307	306,301	978	배재고 2명 배치(강동구)
계	1,301	1,284	1,017,018	792	

2) 안 제9조~제11조(진로교육센터 관련 규정)

○ 「진로교육법」 제16조는 교육감에게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진로교육센터의 설치 및 그 업무 내용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육청은 진로교육센터를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각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센터 및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한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진로직업체험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붙임 2) 참고).

따라서 동 조례안에 따라 센터(지역센터 포함)가 설치·운영된다면 기존의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단과의 협력 관계 및 체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교육청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진로교육법」 제16조가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법령으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⁴⁾ 따라 조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센터업무의 위임 및 위탁과 관한 안 제11조의 근거법령의 삭제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⁵⁾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6046(2016.05.13.).

관계 법령

진로교육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36호, 2015.6.2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진로심리검사)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진로상담)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에 참여한 보호자 등에게 진로교육 설명회·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1]

시·도교육청별 진로교육 조례 제정·시행 현황

연 번	시·도교육청	조례명	공포일자
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10.21.
2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4.10.28.
3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5.2.26.
4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2015.4.21.
5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2015.12.31.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2016.5.16.
7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5.23.

[붙임 2]

진로직업 관련 센터 운영 현황

2016.1.28.기준 [단위 : 백만원, 명]

연번	자치구별 센터	개소일 (설립년도)	운영기관	유형	연간운영비		직원현황 (공무원)
					자치구	교육청	
1	중랑구	2014.03.13	중랑구 사회복지협회	위탁	100	100	4
2	동대문구	2014.09.30	기업가정신	위탁	100	100	3
3	은평구	2013.05.25	은평청소년수련관	위탁	100	100	5
4	서대문구	2013.06.21	(사)한국청소년재단	위탁	100	100	4
5	마포구	2013.09.11	(사)한국청소년재단	위탁	100	100	4
6	금천구	2012.11.01	금천구청	직영	116	100	4
7	구로구	2014.05.13	(주)한양인재개발원	위탁	100	100	6(5)
8	영등포구	2014.08.01	기업가정신	위탁	100	100	5
9	노원구	2012.10.19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위탁	120	100	6
10	도봉구	2013.06.03	(주)한계레교육	위탁	150	100	4
11	용산구	2013.06.28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위탁	100	100	4
12	중구	2013.09.11	중구청소년수련관	위탁	100	100	6
13	종로구	2015.05.28	종로구청	직영	120	100	4(2)
14	동작구	2014.05.23	(사)청소년전략21	위탁	100	100	4
15	관악구	2015.04.16	(주)한양인재개발원	위탁	100	100	4
16	강동구	2012.06.26	기업가정신	위탁	177	100	4
17	송파구	2014.05.09	(주)한양인재개발원	위탁	100	100	4
18	강서구	2013.10.07	서울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위탁	112	100	5
19	양천구	2014.11.28	양천구청	직영	167.3	100	4(2)
20	강남구	2013.10.17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	100	100	5
21	서초구	2014.04.02	(주)한양인재개발원	위탁	110	100	5
22	광진구	2014.05.27	(사)흥사단	위탁	100	100	4
23	성동구	2013.02.06	성동구청	직영	167.9	100	3(무기계약직)
24	성북구	2013.05.22	성북문화재단	위탁	100	100	5
25	강북구	2015.02.04	학교법인 광운학원	위탁	136	100	6

각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 관련 위원회 현황

연번	교육지원청	관할구	지원단 총 인원(명)	지원단 구성	협의회 일자
1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16	교육지원청(3명) 지자체(2명) 학교(2명) 학부모(2명) 센터(2명) 대학(3명) 청소년단체(1명) 공공기관(1명)	2015.03. 2015.06. 2015.10.31.
2	서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30	교육지원청(8명) 지자체(9명) 학교(4명) 학부모(3명)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6명)	2015.07. 2015.12.
3	남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16	교육지원청(2명) 지자체(3명) 학교(6명) 학부모(1명) 체험센터(3명) 커리어코치(1명)	2015.07. 2015.9.30. 2015.12.. 2015.12.15.
4	북부	노원구	20	교육지원청(4명) 지자체(4명) 학교(2명) 멘토단(7명) 학부모(1명) 진로직업체험센터(1명) 구의원(1명)	2015.01.13. 2015.02.10. 2015.03.31. 2015.04.23. 2015.12.22. 2015.10.29. 2015.12.17.
	북부	도봉구	45	교육지원청(2명) 지자체(3명) 학부모(40명)	
5	중부	용산구 종로구 중구	14	교육지원청(3명) 지자체(6명) 학교(2명) 학부모(1명) 외부기관(2명)	2015.6. 2015.7. 2015.9.
6	강동송파	강동구 송파구	19	교육지원청(4명) 지자체(4명) 학교(4명) 학부모(2명) 고용센터(2명) 지역유관기관(3명)	2015.04.16. 2015.09.17. 2015.09. 2015.12.

연번	교육지원청	관할구	지원단 총 인원(명)	지원단 구성	협의회 일자
7	강서	강서구 양천구	17	교육지원청(4명) 지자체(4명) 학교(4명) 학부모(4명) 청소년단체(1명)	2015.04. 2015.06. 2015.09. 2015.12.
8	동작관악	동작구 관악구	38	교육지원청(10명) 지자체(10명) 학교(10명) 진로직업체험센터(6명) 교육복지프로젝트조정자 (2명)	2015.4.23. 2015.4.24. 2015.7.2. 2015.7.8.-7.9. 2015.7.16. 2015.7.30. 2015.10.14. 2015.11.18. 2015.12.11.
9	성동광진	광진구	13	교육지원청(2명) 지자체(2명) 학교(2명) 학부모(2명) 일터(2명) 퇴직시니어(1) 센터(2명)	2015.09. 2015.10.
		성동구	10	교육지원청(2명) 지자체(3명) 학교(2명) 체험처우수멘토(3명)	
10	강남	강남구	15	교육지원청(1명) 지자체(1명) 학교(7명) 학부모(4명) 우수멘토(1명) 청소년단체(1명)	2015.02. 2015.07. 2015.12.04. 2015.12.21.
	강남	서초구	20	교육지원청(1명) 지자체(1명) 학교(13명) 학부모(3명) 우수멘토(2명)	
11	성북	강북구 성북구	44	초등학교(14명) 중학교(13명) 고등학교(5명) 학부모(10명) 시니어봉사자(2명)	2015.09.02. 2015.09.04. 2015.11.19. 2015.11.25. 2015.11.27. 2015.12.08.